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연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691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9.

발 의 자:정연욱 어태영 바정하

이성권 · 김도읍 · 서지영

박상웅 • 박수민 • 정동만

김소희 · 김민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

그런데 현재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한체육회와 축구협회 등 회원종목단체의 재정 상황과 자금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심화되고 있는 상황임. 따라서,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현황과 사용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로 하여금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체육단체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제8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(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체육단체 중특정 종목의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. 이하이 항에서 같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. 이경우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및 기부금품에 관한 해당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대한체육회) ① ~ ⑦ (생	제33조(대한체육회) ① ~ ⑦ (현
략)	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⑧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(체
	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체육
	단체 중 특정 종목의 활동과
	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
	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
	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
	에 따라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
	현황 및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
	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. 이
	경우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
	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및
	기부금품에 관한 해당 정보를
	공개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
	개한 것으로 본다.
<u>⑧</u> (생 략)	<u>⑨</u> (현행 제8항과 같음)